

판 결 경 정 결 정 신 청

사 건 2000드단000(본소) 이혼, 2000드단000(반소) 이혼등

원고(반소피고) 〇〇〇

등록기준지 및 주소 OO시 OO구 OO길 OO (우편번호 OOO-OO)

피고(반소워고)

등록기준지 원고(반소피고)와 같다 주소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- ○○ 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신 청 취 지

○○가정법원 20○○드단○○○(본소) 이혼, 20○○드단○○○(반소) 이혼등 사건의 판결문 중 원고의 등록기준지 및 주소 "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"를, "○○시 ○○구 ◎◎동 ○○"로 경정한다.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

신 청 이 유

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등록기준지 및 주소지는 위 경정 결정하여야 할 "◎ ◎동"의 잘못 표기임이 분명하므로 신청취지와 같이 경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소명방법 및 첨부서류



1. 판결문정본 1통.

1. 기본증명서(원고) 1통.

1. 주민등록등본 1통.

1. 송달료납부서 1통.

2000. 0. 0.

위 피고(반소원고) 🛇 🌣 (날인 또는 서명)

제출법원	소송기록보관법원		
제출부수	신청서 1부	관련법규	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
불복절차 및 기간	·즉시항고(민사소송법 제211조 제3항) ·결정문정본을 수령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443조 제2항, 제425조, 제396조)		
비 용	·인지액: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) ·송달료: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기 타	·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, 그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 (更正決定)을 할 수 있음.		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송절차 >> 송달 및 재판